

대구지방법원 2023. 4. 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4. 6.

판 결 선 고 2023. 4. 20.

주 문

1. 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. 8. 18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. 8. 18. 접수 제38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성열

별지